

발신기관명

수신자 수탁기관의 장

(경유)

제 목 **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(변경) 통보**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(변경)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1. 용역 현황

① 용역종류 및 범위	[] 계획·조사·설계	[] 타당성조사 [] 기본계획 [] 기본설계 [] 실시설계 []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	
	[] 건설사업관리	[] 설계 전 단계 [] 기본설계 단계 [] 실시설계 단계 (□ 의무, □ 임의) [] 구매조달 단계 [] 시공 단계 [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(□ 의무, □ 임의 / □ 전체, □ 부분)] [] 시공 후 단계	
	[] 기타	[] 감리 (□ 공동주택, □ 다중이용건축물) [] 시험·평가 [] 품질관리 [] 안전점검·진단 [] 기타()	
용역명			②공종
사업위치			③ 사업규모
④ 계약금액			⑤ 계약기간
⑥ 계약자	주 계약자:	(대표자)	지분율 %
	공동계약자:	(대표자)	지분율 %

2. 참여기술인 현황

구분	분야	성명	생년월일	기술인등급	용역참여기간	소속회사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
3. 변경내용

변경구분	변경일자	변경 전	변경 후

끝.

발신기관의 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 ()

전송 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공개
구분

작성방법

1.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·조사·설계, 건설사업관리,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,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.
2. ②란의 공종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(대분류)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.
3. ③란의 사업규모란 기재 예시
 - 도로: 확장 및 포장()km, 폭()m - 교량: 길이()m, 폭()m, 교량형식 등
 - 공동주택: ()세대, 연면적()㎡, 층수()층 - 건축물: 연면적()㎡, 층수()층
4.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⑥란의 계약자(지분을 포함)은 전기·통신·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.
5.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⑤란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,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6.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/분야별 책임기술인/분야별 참여기술인/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7.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인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8. 계약기간,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.
9.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